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회장

1. 개정이유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노인복지관 사용 신청 가능 인원 규정을 개정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2. 주요내용

- 노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20인 이상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복지관 사용 신청이 가능한 내용을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개정함(안 제9조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4.7.1.~2014. 7.25)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6682(2014.06.24.) -비규제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용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수탁이후 수탁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p> <p>1. ~ 9. (생략)</p> <p>10. <u>기타</u>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p>	<p>제3조(시설)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그 밖의</u> ----- -----</p>
<p>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8. (생략)</p> <p>9. <u>기타</u>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업무)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의</u> ----- -----</p>
<p>제6조(이용)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제6조(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 -----</p>
<p>제7조(후생사업)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정보화교육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기타</u>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p>	<p>제7조(후생사업)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의</u> ----- -----</p>

하는 사람

제9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생략)

② 사용자는 노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20인 이상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탁이후 수탁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허가한다.

③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위탁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군수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③ (생략)

제9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수탁이후 수탁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허가한다.

③ 그 밖의 -----

-----.

제14조(위탁 취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②·③ (현행과 같음)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사유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 2호에 해당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단순 용어변경과 노인복지관 사용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1. 용어변경: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

2. 복지관 사용 자격 완화

-변경전: 사용자는 노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20인 이상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변경후: 사용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3. 작성자 : 주민생활복지과 사회복지 7급 김성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28		
정책명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명	김정숙	전화번호 063-640-210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6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은 기존안보다 여성노인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인 이상 단체로 제한하는 경우 여성노인들의 사회활동범위나 활동형태 등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 있어 원안동의 함. ▪ 아울러 60세 이상 으로 사용연령을 낮춘 것도 다양한 복지관 활용이나 여성들의 활발한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07월 2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생활복지과</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정나겸/640-2127)</p> <p>주민생활복지과장 귀하</p>			